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7892
----------	-------

제안연월일 : 2026. 3.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	발의일자	심사경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2202431)	2024.07.31.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 위원회(24.11.20.) 상정, 제안설명, 검토 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5.07.08) 상정
	조배숙의원 (2202453)	2024.07.31.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5.08.26.) 상정, 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5.11.20.)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6.03.11.) 상정
	이원택의원 (2203135)	2024.08.23.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6.03.16.) 상정, 축조심사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6.03.17.)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안호영의원 (2205656)	2024.11.18.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5.07.08) 상정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5.08.26.) 상정, 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5.11.20.)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6.03.11.)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6.03.16.) 상정, 축조심사

의안명	대표발의	발의일자	심사경과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3.17.)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2210236)	2025.04.30.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3.11.) 상정
	이춘석의원 (2211949)	2025.08.01.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3.16.) 상정, 축조심사
	이성윤의원 (2212980)	2025.09.15.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3.17.)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한병도의원 (2213659)	2025.10.21.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6.02.0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3.11.) 상정
	윤준병의원 (2213774)	2025.10.29.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3.16.) 상정, 축조심사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3.17.)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윤준병의원 (2216171)	2026.01.20.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3.11.)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3.16.) 상정, 축조심사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3.17.)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윤준병의원 (2217409)	2026.03.12.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3.16.) 상정, 축조심사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3.17.)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03.17.)는 이상 11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6.03.18.)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1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생명경제도시 비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고, 농생명·전환산업·연구개발·인구·정주여건·보건의료 등 분야별 권한 이양과 특례를 확대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구성에 도교육감을 포함하고 위원 정수를 확대하며, 도지사 및 도교육감에게 법률안 의견제출권을 부여함(안 제12조 및 제12조의2).

나. 농생명산업지구 절차 및 협의 대상을 정비하고, 농촌융복합산업 판로지원 위탁 대상 확대 및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 제19조, 제22조의2, 제24조의2).

다. 의료기기산업 관련 일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응급의료 취약지 지방의료원 운영비 우선 지원 및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특례를 두도록 함(안 제26조, 제29조의2, 제116

조의2, 제116조의3).

라. 도지사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 국가의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의2, 제33조의2, 제38조의2).

마.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를 신설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전북전략연구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청년농업인·평생교육, 농지이용증진, 대중교통 활성화, 다자녀 양육자 임용 우대 등 정주여건 관련 특례 등을 정비함(안 제41조의2, 제77조의3, 제77조의4, 제90조의3 등).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 중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를 “위원장,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0명”을 “3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장 및”을 “장, 도교육감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25명”을 “30명”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 반영) ①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은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전북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기간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을 지나서는 아니 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검토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통보하여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지원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심의하여 그 심의결과를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계획”을 “방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조성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포함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로 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지정하려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지정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지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판로지원사업 특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판로지원사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중 “도지사”를 “도지사 및 전북자치도의 시장·군수”로, “전북자치도 소유의 부동산”을 “공유재산”으로, “종사하는 자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종사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동산”을 “공유재산”으로, “금액”을 “금액 이상”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농생명산업 육성 및 농생명산업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생명산업 육성 및 농생명산업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기관 외에도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치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운영 및 지정·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편 제2장 제2절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지방의료원 지원 특례) 국가는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내 지방의료원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고시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의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3편 제2장 제3절에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신·재생에너지의 보급사업 등 특례)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보급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 특례) ① 도지사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자원순환이 실현되는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다른 자원순환산업 및 자원순환시설이 집적화된 생명경제 자원순환 실증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전북자치도 내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을 위하여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시범사업, 연구개발 및 실증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 및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편 제3장 제1절에 제38조의2 및 제4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및 핵심 원재료 재활용 등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촉진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1조의2(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 ① 도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출고하기 전 자동차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제작 또는 조립장소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4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여 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면 도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기간 동안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31조제2항·제3항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3조제1항 전단 중 “해제할”을 “변경·해제할”로 한다.

제63조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6. 연구개발특구

제3편 제4장 제1절에 제66조의2·제66조의3 및 제6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청년농업인 지원 특례) 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내 청년농업인의 요건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6조의3(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특례) ①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생활인구 중 도조례로 정하는 장기 생활인구(이하 “전북자치도 생활인구”라 한다)에 대하여 전북자치도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생활인구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수집·등록할 수 있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현재 주민등록지
5. 통근·통학 등 정기적으로 방문·체류하는 사유
6. 정기적으로 체류하는 직장·학교 등에 관한 정보(소재지 등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북자치도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개인정보 수집·등록·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북자치도 생활인구에 대하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업무·고용 및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북자치도 생활인구 등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7조의2(평생교육 시범도시 지정 등 특례)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과 연계한 평생교육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를 평생교육 시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 시범도시에서 평생교육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평생교육의 육성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편 제4장 제2절에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4까지 및 제7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 특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따른다.

제77조의3(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화단지 육성에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지사의 추가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77조의4(전북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미래 신산업의 발전 및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전북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전북전략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북전략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현금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경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비율을 낮출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전략연구사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78조의2(스마트 제조혁신기업 지원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전북 자치도가 추진하는 스마트제조혁신(「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마트제조혁신을 말한다) 지원사업의 우수기업을 지정할 수 있으며, 도내 기업의 제조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해제에의 기준·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검토하고 전북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편 제1장에 제8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허용 특례) ①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은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북자치도 내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도 전북자치도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의 범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한다.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농지 이용증진) ① 도지사는 농지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15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는 「농지법」 제15조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편 제2장에 제90조의2 및 제9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2(외국인 정착 활성화) ① 도지사는 외국인의 정착 및 생활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도시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2항에 따른 시범도시 지정·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0조의3(대중교통 활성화 촉진) ① 도지사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전북자치도 시민복지 증진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서 운행하는 대중교통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벽지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편 제1장에 제10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조의2(다자녀 양육자 임용 우대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63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대응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 다자녀 양육자에 대하여 임용

우대 등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북자치도 내 다자녀 양육자의 임용 우대 등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한다.

제10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4조(읍·면·동의 구역 특례) ①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읍·면·동의 폐지, 설치, 분할, 합병을 승인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서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항과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편 제3장에 제116조의2 및 제1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2(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특례) ① 전북자치도 내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필수의료 복지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의료원은 제1항에 따라 모집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료원은 업무·고용 또는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기부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업무·고용, 계약이나 처분 등에 의한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그 밖에 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의3(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특례의 존속기한 등) ① 제116조의2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제116조의2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통보받은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목적 외로 운행한 자
2. 제4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3. 제4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 자동차를 운행한 자

③ 제4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제5항 및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규정에 따라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었으나 농생명산업 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제18조제2항·제3항 및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전북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전북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1. ~ 8. (생략)</p> <p>9.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u>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u></p> <p>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p>	<p>제12조(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위원장,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이----- -----</p> <p>② -----</p>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⑥ · ⑦ (생략)

<신설>

-----35명-----
-----.

③ -----

-----장, 도교육감 및-----

-----.

④ (현행과 같음)

⑤ -----
-----30명-----
-----.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 반영) ①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은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전북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기간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을 지나서는 아니 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검토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통보하여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지원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심의하여 그 심의결과를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제18조(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생 략)

2. 농생명산업의 세부 분야별 농생명산업지구(농생명자원의 생산, 가공, 유통, 연구개발 등 산업이 집적화되고 전후방 산업과 연계하여 농업의 혁신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거점 지역으로서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이하 “농생명지구”라 한다) 지정 계획

3. (생 략)

4. 분야별 농생명지구 조성에 따른 환경보전계획

5.·6. (생 략)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방향

3. (현행과 같음)

4. -----환경보전
계획

5.·6. (현행과 같음)

③ -----

-----농림축
산식품부장관과 협의-----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제19조(농생명산업지구 지정) ① (생략)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생명지구를 지정하려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협의는 제18조제3항에 따른 협의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22조(농생명지구 내 진흥사업 지원) 도지사는 농생명지구 내 각종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 6. (생략)

<신설>

<신설>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농생명산업지구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지정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포함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농생명지구 내 진흥사업 지원) -----

-----.

1. ~ 6. (현행과 같음)

7.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지원

제22조의2(농촌융복합산업 제품

균한 금액으로 한다.

<신 설>

제26조(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
의 진흥) ① ~ ③ (생 략)

-----금액 이상-----.

제24조의2(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등) ① 도지사
는 농생명산업 육성 및 농생명
산업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전
문인력 양성기관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생명산업 육성
및 농생명산업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기관 외에도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
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는 제
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치 및 교육훈련
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
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
문인력 양성기관 설치·운영
및 지정·해제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6조(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
의 진흥) ① ~ ③ (현행과 같
음)

<신 설>

④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29조의2(지방의료원 지원 특례) 국가는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내 지방의료원 중 「공공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고시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의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32조의2(신·재생에너지의 보급사업 등 특례)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보급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제33조의2(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 특례) ① 도지사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자원순환이 실현되는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자원순환 산업 및 자원순환시설이 집적화된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전북자치도 내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을 위하여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시범사업, 연구개발 및 실증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 및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8조의2(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및 핵심 원재료 재활용 등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촉진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1조의2(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 ① 도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출고하기 전 자동차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제작 또는 조립장소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4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여 운행하여야 한다.

경우 도지사는 미리 문화체육
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63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
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
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지구·단지에 입주한
연구기관·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
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
리 정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② (생략)

<신설>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3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6. 연구개발특구

② (현행과 같음)

제66조의2(청년농업인 지원 특례)

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
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내 청년농업인의
요건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

<신 설>

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6조의3(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특례) ① 도지사는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생활인구 중 도조례로 정하는 장기 생활인구(이하 “전북자치도 생활인구”라 한다)에 대하여 전북자치도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생활인구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수집·등록할 수 있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현재 주민등록지
5. 통근·통학 등 정기적으로 방문·체류하는 사유
6. 정기적으로 체류하는 직장·학교 등에 관한 정보(소재지 등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북자치도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개인정보 수집·등록·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북자치도 생활인구에 대하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업무·고용 및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북자치도 생활인구 등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67조의2(평생교육 시범도시 지정 등 특례)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과 연계한 평생교육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를 평생교육 시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 시범도시에서 평생교육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도지사는 평생교육의 육성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7조의2(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요청 등 특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따른다.

<신 설>

제77조의3(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

<신 설>

법」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에
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미리 관
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화단지 육성에 필요한 추가
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
산업 특화단지의 육성을 위하
여 필요한 도지사의 추가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77조의4(전북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전북
자치도 미래 신산업의 발전 및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
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전북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이
하 “전북전략연구사업”이라 한
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회
여 전북전략연구사업에 참여하
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현금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
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경
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

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비율을 낮출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 전략연구사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제4항에 따라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제78조의2(스마트 제조혁신기업 지원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스마트제조혁신(「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마트제조혁신을 말한다) 지원사업의 우수기업을 지정할 수 있으며, 도내 기업의 제조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해제
의 기준·방법, 절차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을 검토하고 전북자치도의 자
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
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3조의2(의료인의 의료기관 비
전속 진료 허용 특례) ① 의료
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은 「의료
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
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
한 경우에도 전북자치도 내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특정 의료기관에 소
속된 경우에도 전북자치도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의 의사
· 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의
범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84조의2(농지 이용증진) ① 도

<신 설>

<신 설>

지사는 농지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15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는 「농지법」 제15조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90조의2(외국인 정착 활성화)

① 도지사는 외국인의 정착 및 생활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도시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2항에 따른 시범도시 지정·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0조의3(대중교통 활성화 촉진)

① 도지사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전북자치도 시민복

<신 설>

리 증진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서 운행하는 대중교통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벽지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2조의2(다자녀 양육자 임용 우대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63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대응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 다자녀 양육자에 대하여 임용 우대 등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북자치도 내 다자녀 양육자의 임용 우대 등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도 조례로 정한다.

제104조(읍·면·동의 구역 특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제104조(읍·면·동의 구역 특례)
①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승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읍·면·동의 폐지, 설치, 분할, 합병을 승인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2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① ~ ③ (생략)

<신 설>

<신 설>

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읍·면·동의 폐지, 설치, 분할, 합병을 승인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2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서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항과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의2(지방의료원의 기부금

품 모집 특례) ① 전북자치도 내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필수의료복지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

다.

② 지방의료원은 제1항에 따라 모집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료원은 업무·고용 또는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기부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업무·고용, 계약이나 처분 등에 의한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그 밖에 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의3(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특례의 존속기한 등)

① 제116조의2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제116조의2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신 설>

제131조(과태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
사가 부과·징수한다.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통보받은 의견
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도지사
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
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
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임시
운행허가의 목적 외로 운행
한 자
2. 제4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
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3. 제4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외의

<p><u><신 설></u></p> <p><u><신 설></u></p>	<p><u>지역에서 자동차를 운행한 자</u></p> <p>③ <u>제4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 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p> <p>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 른 과태료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부과·징 수한다.</u></p>
--	--